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혜은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1. 11. 4.(목)

제 목

통신사 임원들의 '쪼개기 후원' 사건 등 처리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 예외적 실명 등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제12조 제1항)

※ 2021. 11. 1. 및 11. 4.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형사제14부)은 11. 4.(목) 아래와 같이 처분함

- '14. 5. ~ '17. 10. '상품권 할인'¹⁾을 통하여 11억 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 3,800만원을 소위 '쪼개기 후원 방식'²⁾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甲통신회사의 대관담당 임원 4명 및 법인을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

-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임원 10명은 약식기소
- 당시 대표이사 A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 그 외 정치자금 기부, 고문료 지급, 변호사비 대납 등과 관련된 당시 대표이사 A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뇌물죄,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들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11. 4.(목)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함

I

주요 수사 경과

- '17. 11. 경찰 내사 착수
- '19. 1. 사건 송치
- '19. 2. ~ 21. 6. 회사 서버 등 압수수색, 피의자 등 30여 명 조사
- '21. 7. ~ '21. 10. 압수물 등 기존자료 재검토
회사 서버 등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전원 재조사

II

공소사실 요지 등

1. 불구속 기소

- 피고인 : ① B ['14~'15 대관담당 부서장], ② C ['16~'17 대관담당 부서장], ③ D [당시 대관부서 전무], ④ E [당시 대관부서 상무], ⑤ 甲이동통신회사 [법인] : 양벌규정 적용
- 공소사실 요지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
 - B, D, E는 공모하여, '14. 7.~'15. 11. 상품권할인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지인 등 명의로 82회에 걸쳐 국회의원 28명에게 총 1억 2,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 C, D, E는 공모하여, '16. 1.~'17. 9. 같은 방법으로 278회에 걸쳐 국회의원 83명에게 총 3억 1,4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 甲회사는 임직원들이 그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

1)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권 대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

2)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어 기부하는 행위

2. 약식 기소

- 피고인 : ① F [당시 사장급 임원], ② G [前 부사장급 임원, 現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 10명
- 공소사실 요지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³⁾
 - F, G 등 10명은 '16. 9.경부터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
 - ※ 가담 정도(기부 명의 대여), 기부 금액 등 고려하여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

피고인	약식기소 공소사실 요지
F	2016. 9. 7. 국회의원 14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G	2016. 9. 6.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H	2016. 9. 6. ~ 9. 9.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합계 1,5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I	2016. 9. 6. ~ 9. 7. 국회의원 12명의 후원회에 합계 1,2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J	2016. 9. 7.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합계 1,5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K	2016. 9. 7. ~ 9. 9. 국회의원 14명의 후원회에 합계 1,5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L	2016. 9. 6.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3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M	2016. 9. 7. 국회의원 12명의 후원회에 합계 1,2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N	2016. 9. 7. 국회의원 7명의 후원회에 합계 8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O	2016. 9. 7. ~ 9. 8. 국회의원 3명의 후원회에 합계 6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3. 불기소 처분

- 당시 대표이사 A에 대하여는 '16. 9. 전체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 발견되지 아니하여 각 불기소 처분
 - 검찰 송치 이후, G를 포함한 피고인들과 A를 수회에 걸쳐 소환 조사하고, 대관부서, 인사·예산·감사부서 등 주요 부서의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 30여명을 47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함
 -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등을 확보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음

3)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를 분리하여 약식 기소함

- 그러나 압수물 분석 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도,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A에게 보고되었다거나 A가 이를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하였다고 불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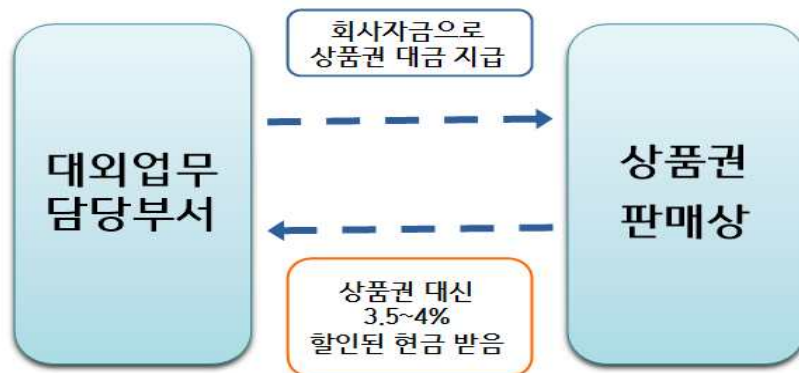
※ 대관담당 임원들이 2016년 무렵 기부금 집행내역과 국회대응 계획에 대해 A와 G에게 2차례 보고한 바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합법적인 기부협찬과 통상적인 국회 대관 업무 위주로서 A 등이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기부행위에 가담한 임원 중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임원 1명 기소 유예, 4명 불입건

Ⅲ 범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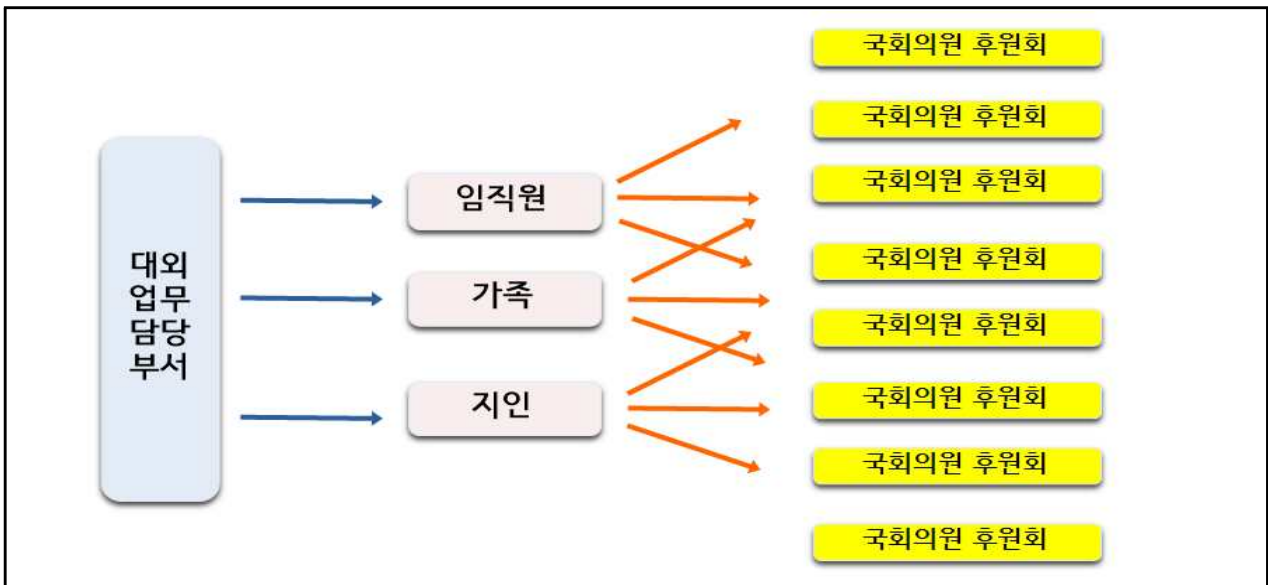
1. 부외자금 조성

- '14. 5. 甲회사 대관담당 부서장 B는 회사 예산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는 상품권을 교부받는 대신 3.5% ~ 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소위 '상품권 할인' 방식
- B와 그 후임 부서장인 C는 '14. 5. ~ '17. 10. 합계 11억 5,100만원 상당 부외자금 조성



2. '쫄개기 후원'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 및 업무상횡령

-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B, C 등 대관부서 임원 4명은 '상품권 할인'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하여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쫄개기 후원' 방식으로 '14. 5. ~ '17. 10.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 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동액 상당 조성, 보관 중인 부외자금 업무상횡령



3. 고위 임원들 동원 범행 실행

- '16. 9. 범행의 경우, 기존 범행과 달리 대외업무 담당부서를 넘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실행되었음
-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하여 甲회사 고위 임원들 대부분이 기부 행위에 가담
- 가담경위 및 기부 금액, 직책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가담정도 중한 임원들 입건 후 약식기소하고,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임원들은 불입건함

순번	사건 내용	처분 이유
1	정치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본건 금원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한 A 등 뇌물공여 고발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가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정치자금 기부를 보고받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 관계도 인정되지 않음 ▶ 혐의없음
2	본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국회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수수 고발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 기부를 보고받아 이를 지시한 사실 등 인정하기 어렵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해당 의원실 관계자들이 정치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혐의없음
3	본건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A의 변호사 수임료를 회사자금에서 지급하여 횡령한 혐의에 관한 고발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자료, 입금증,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A가 변호사 수임료를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혐의없음
4	A가 관료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 등으로 위촉하고 고문료 등 19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甲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에 관한 특경법위반(배임) 고발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등으로 위촉된 사람들의 이전 경력, 甲회사의 현안, 활동내역 등을 종합할 때 위촉이 부당하다거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혐의없음
5	A가 특정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 하여 甲회사 운영자금에서 68억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특경법 위반(배임) 고발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점, 실제 제작한 광고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선정이 부당하다거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혐의없음